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356호, 2024. 2. 27. 공포, 2025. 2. 28. 시행)됨에 따라,

국립묘지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·소방공무원의 안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경찰·소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,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및 징계의결서 등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6호 중 “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·바목·사목 및 아목”을 “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·바목·사목·아목 및 같은 항 제4호 라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
가.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

나. 징계의결서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서류 1부

제3조제4항 본문 중 “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·마목·사목 및 같은 항 제4호”를 “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·마목·사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”으로 한다.

제3조제5항제1호 중 “다목·바목·사목 및 아목”을 “다목·바목·사목·아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

른 서류

가.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

나. 징계의결서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서류 1부

별지 제1호의4서식의 (뒤쪽)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6호 중 “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·바목·사목 및 아목”을 “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·바목·사목·아목 및 같은 항 제4호 라목”으로 하고, 같은 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
가.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

나. 징계의결서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서류 1부

별지 제1호의5서식의 (뒤쪽)(Back Page) 첨부서류(Required documents)란의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: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및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서류 각각 1부

(In the case of Police officer · Fire Fight officer falling under Article 5 (1) 4 (라) of 「the National Cemetery Act」 : 1 Copy of document confirming the fact of disciplinary action and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.

별지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징계처분 사실확인서

징계처분 대상자	성명	소속	
	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	직위(직급)	

징계처분 일자	징계처분 종류	징계처분 사유	비고
	※ 징계처분 종류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 등 징계의 종류를 작성		

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제4호의2, 동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처분권자인 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안장 등의 신청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(이장 · 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)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(이장 · 영정봉안)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	제3조(안장 등의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 · 바목 · 사목 및 아목에</u> 해당하는 경우: 전사증명서 · 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	6. <u>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 · 바목 · 사목 · 아목 및 같은 항 제4호 라목</u> ----- -----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<u>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</u> <u>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</u> <u>구분에 따른 서류</u> <u>가.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</u> <u>처분 사실확인서 1부</u> <u>나. 징계의결서 등 징계사유</u> <u>가 확인되는 서류 1부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1.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 ·
바목 ·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: 전사증명서 · 순직증

1. ----- 다목·바
목·사목·아목 및 같은 항
 제4호라목-----

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</u> <u>해당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</u> <u>구분에 따른 서류</u> 가. <u>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</u> <u>처분 사실확인서 1부</u> 나. <u>징계의결서 등 징계사유</u> <u>가 확인되는 서류 1부</u>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